

서울 행정법원

제 6 부

[2020구단78356]

사 건 명 : 장해급여지급

원 고 : 원고1

인천 남동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 종결 : 2021. 12. 15.

판결 선고 : 2022. 0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에서 선장으로 근무한 어선원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재해보상보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8. 9. 11. 위 어선에서 조업을 하던 중 와이어에 손을 다쳐 '우측 수부 제2수지 으깬 손상'을 입고, 곧바로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어선원 등의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한 후 2020. 3. 16.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제2수지의 관절운동제한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20. 3. 20.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8. 원고의 장해가 비영구적인 한시적 장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설령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영구장해를 입은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19○○○.○○.○○.생인 원고의 가동연한(만65세)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9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 등에게 지급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어선원 등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축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2020. 3. 16자 장해진단서에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비영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이가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의 관절운동 부전강직 소견이 보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등급기준 미달의 상태이고, 그 원인은 관절낭의 구축에 따른 것이며, 통상 이러한 경우 감정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가 우측 제2수지 말단부의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4급 제10호를 준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사료되나, 본 압계 손상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지신경의 말단 미세 분지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감정일로부터 3년간의 한시장애로 사료됨(약물복용이 없더라도 감정일로부터 3년 경과시 자연회복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뿐, 원고의 가동연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원고는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1

